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종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6.

발의자 : 정종섭 · 김성원 · 정유섭
조훈현 · 성일종 · 문진국
송석준 · 정태옥 · 김종석
이완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,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,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·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(需給)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5제2항 신설).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5의 제목 중 “설치기준”을 “설치기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결과 기계식주차장이 과다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의5(기계식주차장의 <u>설치</u> <u>기준</u>) (생 략)</p> <p><신 <u>설</u>></p>	<p>제19조의5(기계식주차장의 <u>설치</u> <u>기준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</u> <u>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</u> <u>른 실태조사의 결과 기계식주</u> <u>차장이 과다하게 설치된 경우</u> <u>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</u> <u>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